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련한 환수 처리 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

내 용

「기초연금법」 제19조, 보건복지부 「기초연금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의 허위·지연신고,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,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되어있다.

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, 보건복지부 「기초연금사업안내」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,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¹⁾(‘15년 기준)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다.

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(2018. 2. 26. ~ 3. 16.) 중 울산광역시의 사망으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된 자에 대한 급여 환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○○○ 등 12명에게 1~58개월간 8,494,420원을 지급하고 정부합동 감사일(2018. 1. 16.)까지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.

1) 2018년은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12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조치

또한 ○○○은 2007. 1. 2. 사망하였으나 2015. 5. 8. 사망 신고하여 2007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6,388,500원을 부정수급 하였는데, 환수업무를 처리 하면서 「기초연금사업안내」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수사의 퇴에 그쳤다.

[표]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(사망)자 급여 환수 상태 관리 현황

<단위 : 명, 원>

구분	구/군	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자(사망)			과오 지급 기간	과오 지급 개월수	과오 지급액
		성명	생년월일	사망일			
계		12명				70	8,494,420
1	중구	○○○		2007-01-02	201006 ~ 201503	58	6,388,500
2	중구	○○○		2014-01-09	201402	1	96,800
3	중구	○○○		2016-01-25	201602	1	202,600
4	중구	○○○		2015-06-02	201507	1	202,600
5	중구	○○○		2015-11-17	201512 ~ 201601	2	324,160
6	중구	○○○		2017-05-24	201706	1	164,840
7	중구	○○○		2016-04-27	201605	1	204,010
8	중구	○○○		2015-11-29	201512	1	202,600
9	중구	○○○		2016-10-27	201611	1	204,010
10	중구	○○○		2014-04-29	201405	1	99,100
11	중구	○○○		2015-11-24	201512	1	202,600
12	중구	○○○		2015-09-24	201510	1	202,600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

[시정]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한 후 지급된 기초연금 8,494,420원에 대한 징수 절차를 적극 이행하시기 바라며,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「기초연금법」 제29조, 보건복지부 「기초연금사업안내」에 따라 고발 등 적의조치하고, 수급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